

인권정보자료실
CPj1.25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관련 법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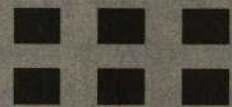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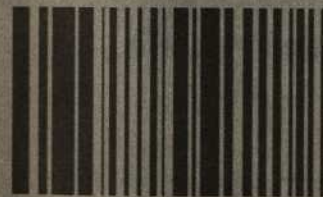
(140-868)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02)7744-551(대표) 02)701-7688(정책국)

인권정보
CP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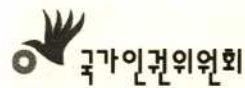
정보인권지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관련 법률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의해 제작
되었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을 발간하며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안 사고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이미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평가하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지침은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첫 시도라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정보인권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친구에게도 스마트폰이나 개인저장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기를 희망하며...

2004년 10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차 례

「정보인권 지침」을 발간하며	5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9
개인정보 보호 원칙	12
* 관련 용어 설명	23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2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26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27
2. 사업과 개인정보 흐름의 파악	29
3.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질문지	32
4.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의 작성	44
관련 법률	46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59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최근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정보사회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보인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늘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 혹은 '프라이버시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공부문과 상업적 영역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되고 집적, 전송되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집되고 보관되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자기정보통제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전후로 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법률과 기구들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헌법」과 개별 법률로 이루어 지다가 공공부문의 행정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1994년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199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비롯해 여러 개별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조항이 삽입되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명확치 않거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지침은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8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

원칙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설]

수집 제한의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집하는 자가 이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잘 알려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보존기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해당 상품이나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나, 법률에 따라 혹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으로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

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및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정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 동의를 어려울 경우 사후에 개별적인 동의철회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최소의 침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을 동원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자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누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7. 개인 참가의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알려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주의해야 한다. 개별적인 목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없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업무상 필요한 결재 또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관한 합의 당사자의 기관명 또는 업체명, 합의 일자, 합의 목적, 교환되거나 확인되는 정보의 개별 항목, 합의의 유효기간, 합의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또는 고지의 방법, 연동의 해제이유와 연동된 개인정보의 보안대책 등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관한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자는 연동의 목적을 초월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할 수 없다. 합의서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동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합의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이용하여 원래의 수집목적을 벗어난 가공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할 수 없

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동의를 어려울 경우 사후에 개별적인 동의철회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없을 때 즉시 연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연동을 위해 구성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를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때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나, 법률에 따라 혹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익명으로 계약 또는 교섭을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이 실명으로 계약 또는 교섭을 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중대한 공익 및 사익과 관련되어 부득이 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이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원칙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보유목적, 보유기관의 명칭,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예정 시기,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공공 감사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거나 위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하여 공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가운데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이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이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칙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해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유, 사용, 처리, 보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교육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현황과 시스템·개인정보의 속성과 수집목적·기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유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관련 용어 설명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단, 이 지침에서는 개인적 사용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정보주체

처리된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하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정보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해당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집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다. 그외에도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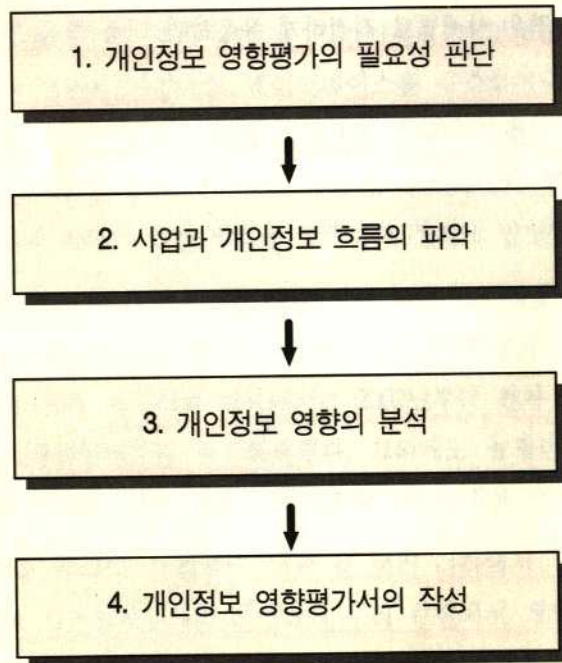
이 지침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분석하여 우리 주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또한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직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지침에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 일부 내용이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에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지침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적절하게 응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 것이 좋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무엇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누가 언제 어떤 대상을 평가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누가

이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 사업과 개인정보 흐름의 파악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상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의 흐름에 주목한다.

사업의 파악

먼저 사업의 명칭과 개요, 모든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를 파악한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접촉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흐름의 파악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과 목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시스템이나 관련 설비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한다. 이러한 구조의 파악은 잠재된 보안 위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개인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공개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도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자	형태 (종이, 전자매체 등)	이용자	수집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자

3.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앞서의 단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과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파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은 뒤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에 따른 평가 사항을 질문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판단하기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일부 질문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질문지

원칙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쓰시오.	
위 수집 개인정보가 모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까?	
그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수집할 때 제시하는 글이나 말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옵트아웃)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까?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동의 받는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상품이나 역무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번거로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출처를 자세히 쓰시오.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쓰시오.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정보주체가 아동 등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거나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히 쓰시오.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모르는 감시 등 불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 방법을 자세히 쓰시오.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쓰시오.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정보나 세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까?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이러한 경우 그 방법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일시가 정확히 나타납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이용 목적을 자세히 밝혔습니까?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애초 구축 목적을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연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동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유효기간과 책임이 명시된 소정의 합의서가 작성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개인정보가 그 사람을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이용 목적을 모두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쓰시오.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집 목적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 혹은 공개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제공·공개 목적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개인정보가 동의 하에 제공 혹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이용합니까? 혹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혹은 통합시킬 수 있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파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시오.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이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파기,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쓰시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등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모두 기록됩니까?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특별히 고안된 보안 방법이 있습니까?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의 상태와 품질을 계속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칙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개인이 이에 접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밝히시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내서,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자세한 방법을 밝히시오.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간편하게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공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원본뿐 아니라 사본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됩니까?	
정보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이외에 정보주체가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정정 청구의 권리를 알리거나 독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정보주체는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자동적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정보주체가 평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지체없이 요청을 처리합니까?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이 중지됩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결정 내용이 기록됩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길 원할 때,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까? 파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관련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불만처리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원칙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알립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쓰시오.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 시기는 언제이고 감사자는 누구입니까?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법률 혹은 계약으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까?	
불만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감독과 평가 체계가 있으면 모두 쓰시오.	
이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당국,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세히 쓰시오.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4.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의 작성

앞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 사업의 개요
- 개인 정보 관련 상황
- 모든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와 그 관리책임
- 관련 정책
- 영향 분석을 통해 유추된 위험
- 참고 사례
-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 제안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이다. 평가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정보주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평가자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평가 과정 중에 정보주체의 의견을 비롯하여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은 검토하여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평가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식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

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불복청구)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불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

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내역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삼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기관명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3.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리정보의 종류·이용목적·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

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① 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 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우편번호 140-868)
- 전화 : 02)7744-551(대표) 02)701-7688(정책국)
- 팩스 : 02)701-7112
- 홈페이지 : <http://act.jinbo.net>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 개작허용
[http://www.freeuse.
or.kr/license/by](http://www.freeuse.or.kr/license/by)

이 지침의 저작권은 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으며,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 개작허용'에 따라,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 공연 · 방송 · 전송 · 전시 · 배포 · 2차적 저작물 작성 · 편집물의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